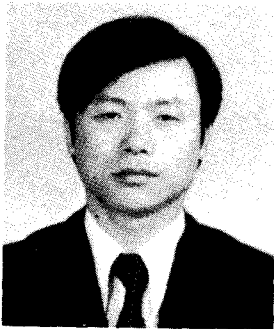


영업비밀보호

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黄 義 昌
〈特許廳 調査課長〉

목 차

1. 머 리 말
2.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3. 영업비밀보호 왜 필요 한가?
4.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입법추진
5. 어떤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가?
6. 영업비밀이 침해 되었을 경우 어떤 구제 수단이 있는가?
7.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8. 맺 는 말

〈이번號에 全載〉

1. 머 리 말

근대 세계경제사를 보면 60년대엔 미국이 세계경제를 제패했고 80년대엔 일본의 경제공격이 세계를 휩쓸었다. 90년대는 유럽이 도전하는 시대에 들어 섰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들은 세계경제를 석권하기 위하여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기술개발규제 움직임을 구체화(기술개발 규제법) 하면서 신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얼마전 미국 휴스턴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대기업의 임원집에 2명의 남자가 차를 몰고 와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자루를 집어 싣고 손살같이 사라졌다. 동네의 경비원은 하도 이상해서 자동차 넘버를 적어 경찰에 신고 했는데 FBI(미연방 수사국)는 추적 끝에 쓰레기 자루를 싣고 간 문제의 차량이 휴스턴 주재 프랑스 총영사관 차량 이었음을 밝혀 냈다. FBI는 프랑스 정보기관이 미국 기업의 기술정보와 판매전략을 알아내기 위해 기업간부집의 쓰레기통까지 뒤진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지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90년대의 경제 전쟁이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조그만 사건이다.

「유럽의 震動(Euroquake)」이란 화제작을

쓴 대니얼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끼리의 전투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군대가 되고 있다. 기업간부들은 어느면에서 대통령이나 수상들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스파이전도 소련의 탱크 디자인보다는 경쟁기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새로운 전쟁에서 기업종사자들의 교육수준과 숙련도, 기업사명에 대한 충성심은 과거 군사전쟁에서 군인들에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똑 같이 중요해지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세계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중화기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기술과 자본 그리고 판매의 노우하우로 무장한 기업들이다.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같은 재벌은 자그마치 2백억달러를 들여 전세계에 뻗어 있는 계열기업-소비자-공급자를 연결하는 국제정보네트워크(MIND)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첨단 컴퓨터 체제로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냉전시대는 누가 먼저 첨단군사기술을 손아귀에 넣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체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져 누가 최고의 상품기술을 장악하고 누가 가장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경제전쟁의 승자가 된다.

첨단군사기술은 있어도 상업기술과 돈이 없는 소련이 「맥 못 चु는 거인」이 된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파워게임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이 경제전쟁의 전투병력인 기업체와 연대하여 기업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진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냉전 종식후 군사비 감축에서 남게된 「평화의 배당금」을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제고에 쓰기 시작함으로써 스파이전은 이제 군사외교 전선에서 경제전선으로 옮겨 붙고 있는 양상이다. 이들은 기업들을 위해 쓰레기통만 뒤지는 것이 아니다. 출장은 외국기업직원들의 회사기밀문서가 든 가방을 노리기도 하고 현지 지점과 본사간의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통화들도 청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카터필라 같은 회사는 모든 해외와의 교신을 암호로 하고 있고 듀폰은 전직 FBI의 방

첩책임자를 고용했다고 한다.

지금 선진국들은 기술 등 노우하우를 축으로 한 세계경제시장 장악을 위하여 분주히 뛰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인 IBM과 독일의 최대 회사인 지멘스는 컴퓨터 칩의 미·독동맹을 맺었고, 일본의 거대한 재벌인 미쓰비시 그룹도 독일의 다이물러벤츠 그룹과 제휴, 일·독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시장 분할점거를 노려 전략적인 연대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같이 날로 치열해만 가고 있는 산업경쟁사회에서 경쟁국가, 경쟁기업체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 노우하우 등 사업활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누가 먼저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정보의 개발이나 관리, 보호 등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인 것 같다.

이는 영업상의 비밀정보를 손 쉽게 얻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영업비밀 정보가 일과성이나 또는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정보에 대한 관리법 등의 개발 필요성이 그리 절실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또한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기술혁신과 경제사회의 정보화, 서비스화 추세에 따라 영업비밀은 양산되어 가고 있고 그 유통량도 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고용인구의 빈번한 이동, 산업스파이 사건의 증가 등으로 비밀정보 누출에 대한 위험의식과 함께 그 보호의 열망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등 영업비밀의 위상이 크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2.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영업비밀이란 사업활동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 축적한 비밀정보로서 생산방법 등의 기술상의 비밀 뿐만 아니라 판매전략 등의 상업상의 비밀도 포함하며 기업비밀, 재산적 정보, 산업비밀 또는 노우하

우 라고도 한다. 그러나 종래의 노우하우는 일반적으로 기술상의 비밀정보만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소위 산업스파이가 노리는 기술상, 상업상의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로 보아도 좋을 것인바, 기술 정보에는 설계방법, 설계도면, 공정도, 실험데이터, 성분원료의 배합비,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햄버거의 조리방법, 코카콜라의 향 내는 방법 등이 있으며 상업정보에는 고객의 리스트, 거래선의 루트, 신제품의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판매매뉴얼 제품의 할인 시스템 등이 있고 기타 경영정보로서는 인사·조직·사무관리기법, 재무·금융 등 재산관리 방법 및 자료 등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공개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경제성 즉 재산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고 (비밀성) 그 영업비밀이 사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이용성) 일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영업비밀은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법률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영업비밀보호제도는 그 개발정보의 비밀성 유지가 요체인데 반하여 특허제도는 그 발명, 고안의 공개가 요체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침해행위를 전제로 하여 이를 규제함으로써 비로서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나 특허제도는 공개를 댓가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비밀정보가 공개되지 않는한 즉, 그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영구히 독점행사 할 수 있는데 반하여 특허제도는 일정기간 즉, 존속기간내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영업비밀보호제도는 특허권, 저작권 등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것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특허제도는 특허청구의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인정되어 보호 받을 수 있다.

네째, 영업비밀 보호제도에서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고 공시제도가 없어 제3의 선의의 취득자에게는 대항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특허권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반면 영업비밀은 그 비밀성을 특정시한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비밀성이 존속되는한 계속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특허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것도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영업비밀보호제도와 특허제도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3. 영업비밀 보호 왜 필요인가?

최근 기술혁신과 경제사회의 정보화 추진에 따라 기술상 또는 상업상의 노우하우 등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 거래 또한 활발해 지면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도용(산업스파이 사건 등)하는 등의 부정행위의 위험도 증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이와같은 영업비밀의 지적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려는 움직임이 GATT/UR 등의 국제교섭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제에서는 이와같은 무형의 지적재산인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와 국제적으로 보아도 반드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제도의 마련이 불가피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보호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 보면

첫째, 영업비밀의 개발, 축적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만일 다른 지적재산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스스로의 연구, 개발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개발, 축적하기 보다는 정당한 댓가의 지불없이 타 기업의 영업비밀을 도용하거나 무단사용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될것이다. 이는 결국 타기업의 영업비밀을 도용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기업이 스스로의 연구·개발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개발·축적한 회사를 축출함으로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이와같이 산업계의 흐름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

해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산업계의 창작활동의 산물인 영업비밀이 완벽하게 보호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새로운 창작활동의 동기를 약화시켜 결국 기술개발이 위축 되고 영업비밀 정보의 축적이 저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술 등 노우하우의 개발에 소요되는 장기적 투자가 수포로 되는 결과를 가져와 관련 산업계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이를 이유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기피할 우려가 있어 이는 결국 국가산업 전체의 발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연구 개발활동을 장려하고 연구개발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째, 최근 미국 등 선진공업국들의 기술개발 규제움직임이 구체화 (기술개발 규제법화) 되면서 공여기술의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흡할 경우 첨단기술의 제공을 기피하게 되어 우리의 선진산업화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의 신기술 및 노우하우의 이전을 보다 촉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네째, 1986년의 한·미간 통상관련 지적재산권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은 물론 GATT/UR Trips(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채택이 확실시되고 있고, 우리의 대외투자 또한 증가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우리의 영업비밀이 외국에서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보호 추세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업스파이 등의 반윤리적, 반문명적인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내지는 처벌을 통해 경쟁의 법칙을 바로 세우고 자력으로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기술관, 기업관”을 산업계에 정립하기

위해서도 기술정보 등 노우하우의 도난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두어 법과 제도의 엄한 운영을 통해 또는 기업과 직장인의 가치관을 통해 영업비밀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도용된 영업비밀에 의하여 생산·판매된 상품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가 진실로 원하는 상품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 선량한 소비자를 속이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품질이 조악할 경우 불의의 피해를 보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의 유통은 소비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기계류나 차량, 선박, 항공기 부품 등에서의 상품은 산업재해를 이룰 위험까지도 내포하고 있음으로 이와같은 소비형태의 왜곡의 예방을 위해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현행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 제도의 미비점을 들 수 있는바 우리의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민법이든 상법이든간에 영업비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침해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와 고용관계 등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때에는 민법의 계약법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이고 침해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성하지 못하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구제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더욱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을 인정하기란 더 더욱 어려웠던 실정이다.

또한 형법에 있어서도 영업비밀침해 행위 그 자체를 범죄행위로 보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기업의 종업원이 자신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 자신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영업비밀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산업스파이 등 제3자가 영업비밀을 탐지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이

고작이다.

4.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입법추진

가. 외국의 입법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미법계국가에서는 19세기초경 Commonlaw에 의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보호되어 오고 있던 중 미국이 1979년에 모델법인 통일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현재 32개 주에서 주법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고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민법, 불법행위법 등 개별법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발도상 국가인 홍콩이나 말레이시아는 물론 남미의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동구권 국가인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도 법적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우리의 입법추진 경위.

우리나라에서 최근 실시한 영업비밀에 관한 설문조사 (한국 정보 산업연합회)에서 총 응답자의 93.6%가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 법을 시급히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5.2%, 1년 내지 2년내에 제정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5.8%를 차지함으로써 70.1%가 2년내에 제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계에서의 이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크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와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이미 1988년 8월부터 학계, 법조계 등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영업비밀 보호제도 연구반을 설치, 운영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1989년, 1990년에 각각 1차례씩의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산업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1990년 12월 부터 영업비밀 보호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6차에 걸친 심의과정을 거쳐 1991년 4월 말에 특허청의 법안 초안이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이 초안을 가지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5회

에 걸친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가진바 있고 현재 관계부처 의견조화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당정협의,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1991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5. 어떤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수한 형태인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6가지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침해행위 유형은 다음 2가지 이다.

① 절도, 사기,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입법초안 제11조 제1항 제1호, 부정취득 행위 등)

② 계약관계(고용관계, 라이선스 계약등)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입법초안 제11조 제1항 제4호,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이상 2가지의 기본적인 침해행위 유형에 따르는 사후적 관여행위를 각각 2가지씩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취득행위 (제1호)와 비밀유지의무위반 행위(제4호)를 취득당시에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각각 제2호, 제5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취득행위 (제1호)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제4호)를 취득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취득후 알게 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각각 제3호, 제6호에 규정하고 있다.

6.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가?

영업비밀이 침해 되었을 경우의 구제수단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인 손해배상 청구권 외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영업비밀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제

거 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7. 기업은 영업비밀보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입법이 될 경우, 일단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확실한 법적구제수단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입법이 된다 해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스스로가 자기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 법은 영업비밀의 유지, 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당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부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취업규칙이나 영업비밀 관리규정등을 만들어 사내에서의 비밀누설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은 물론 타사 즉 외부로부터의 영업비밀 침해를 받지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어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여 영업비밀 정보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취업규칙 등의 제정, 시행

기업의 임·직원의 신분으로 준수해야할 취업규칙이나 고용규칙 등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여 신규사원 채용시 이를 숙지 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한 서약서 등을 징수 하는 등의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1) 영업비밀의 누설방지.

자기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영업비밀은 물론 기업체로 부터받은 특별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영업비밀이나 자기업무와는 무관하나 전문, 자료등의 정보에 의하여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하여서도 재직시는 물론 퇴직시에도 무단누설 하거나 경쟁기업체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칙을 만들어 이의

이행을 채용시 고용계약 등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쟁업종에의 전직제한.

기업체의 임·직원이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정보와 관련된 분야의 경쟁업종에 전직을 하고자할 경우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전직을 제한 할 수 있는 경영피지의 무를 부과 할 수 있는 규칙을 둘수 있을 것이다.

3) 경쟁적 창업행위(경쟁기업과의 동업) 금지.

기업체 임·직원이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영업비밀보유 업체보다 우위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적 창업행위 즉 경쟁기업과의 동업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경우 기업의 임·직원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규칙은 사회질서(사회상규, 공서양속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제104조의 법리에 따라 당연무효가 됨으로 과다하게 종업원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규칙을 만들어 직업선택의 자유나 노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나. 기술도입 계약 취급규정의 제정, 시행.

기술도입계약의 대상범위, 도입기술의 수준, 기술도입료액, 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후의 제반 처리사항 등 기술도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칙사항 등을 규정화하여 이에 준하여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계약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까지 계속 영업비밀 유지를 의무화 한다던가, 계약범위를 턱없이 넓힌다면, 개량된 발명, 고안까지도 도입기술의 범주로 인정한다 던가, 계약기간 만료후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재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로 알티 지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 무모하게 손해를 입거나 부당한 이익을 보게되는 폐단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할 것이다.

다. 영업비밀의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 운영.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 또는 창출된 영업비밀은 기업에 신고하여 기업의 영업비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비밀 신고제를 두어 운영한다. 신고된 영업비밀은 가칭 영업비밀 관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비밀 관리기록부에 올리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도 아울러 마련하여 영업비밀보호제도의 활발한 운영을 도모한다.

라.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 시행.

사업활동에 필요한 영업상의 비밀 정보와 관련되는 모든 인원, 부서, 자재, 시설, 통신, 장소 등을 경쟁기업 또는 비밀취급비인가자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반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즉, 각 기업은 영업비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한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 영업비밀 관리체계의 확립.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에 영업비밀관리 업무 총괄부서(총무과, 서무과, 관리과 등)를 두는 한편 가칭 "영업비밀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관장토록 한다.

- 영업비밀 관리제도의 연구, 발전.
- 영업비밀 대상업무 및 그분류 기준의 설정
- 영업비밀정보의 보존기간 및 그 보존방법
- 영업비밀의 관리 및 폐기방법.
-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감독 및 통제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영업비밀 유출 등 사건 발생시의 대책 마련 등

2) 영업비밀의 관리방법.

영업비밀 관리는 중앙집중관리 또는 부, 과, 계단위의 분산관리 등의 방법이 있으나 영업비밀정보의 이용면에서 보면 분산 관리방법이 편리 할 것으로 판단 된다.

3) 영업비밀 취급자등 인가.

영업비밀 보호의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취급자와 책임자를 지정, 인가한다. 영업비밀 취급자, 책임자는 그 영업비밀 정보를 직접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와 직상급자로 하는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4) 영업비밀 내용의 구분 및 등급의 결정.

영업비밀의 내용이나 중요도에 따라 I급, II급, III급 및 대외비등 비밀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보안의 질을 강화하되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고 과대하게 분류하여서는 않될 것이다.

5) 영업비밀의 보존년한 설정.

영업비밀은 그 활용가치의 정도에 따라 보존기간을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그 보존기간은 최단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길게 잡아서는 않될 것이다.

6) 영업비밀의 보관용기.

영업비밀의 보관용기는 휴대하기 어렵고 무게가 있는 금고 또는 2중철제 캐비닛으로 하고 반드시 2중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보관용기의 표지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않될 것이다.

7) 영업비밀 보관장소의 설정.

영업비밀의 안전적 보관을 위하여 보관장소를 설정하여 외부출입자는 물론 사내 관계자 외의 접근도 통제하여야 할것이다. 보관장소의 선정은 사무실의 위치, 보관함, 캐비닛, 금고등에 유의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8) 영업비밀 관리기록부의 비치.

영업비밀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영업비밀의 분실, 훼손, 거래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출납을 그때 그때 기록하여 영업비밀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9) 통신 보안

○음어의 보안.

전언통신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수령한 음어문은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영업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통신문의 보안.

국제통신문은 비밀의 분류기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상향분류 할 필요가 있다.

○텔렉스, 국제전화 및 팩시밀리 등을 사용할 시에는 보안통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속할 경우에는 영업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10) 시설 보안

○보호구역의 설정.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보호구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구분하되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비인가자 또는 부외자가 업무상 출입이 빈번한 구역의 설정을 피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출입과 통제

통제구역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1) 영업비밀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관리.

○관련기관등에 대한 보안.

관계기관·단체, 용역회사, 하청업체 등에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정보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영업비밀 표시는 물론, 담당자의 영업비밀 준수동이서에 서명토록하는 조치등을 취하여 두면 유사시 법적효과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비밀관리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외래방문객에 대한 보안

기업에 업무상 또는 홍보상 외래객이나 시찰단이 자주 방문하게 된다. 이 중에는 경쟁기업체의 비밀탐지 의무를 띄고 온자도 있을수 있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비밀정보가 새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래 방문객에 대한 주의도 요망된다 할 것이다.

○사내 비밀취급자 이외의자에 대한 보안

사내에서 통상 영업비밀 업무와 무관한 직에

있는자로 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에 관한 복사, 복제,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비밀준수 각서 등을 징수하여 보관하는 등 비밀관리에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2)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교육.

신입사원은 물론 재직자에게도 영업비밀 관리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하여 영업비밀에 관한 관리방법을 철저히 주지 시키는 물론 퇴직후에도 악의성 누설을 하여서는 않된다는 기본 인식을 갖도록 보안의 생활화를 몸에 익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3) 영업비밀 관리상태의 점검.

영업비밀 관리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비밀 정보의 누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14) 영업비밀 유출등 사고에 대한 조치.

영업비밀의 누설, 비밀정보자료의 분실, 보호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내의 불법침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비밀관리 책임자, 영업비밀 관리 업무 총괄부서 및 영업비밀 관리 위원회 등에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내조치는 물론 변호사 등에 의한 법적 구제 등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몇가지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임으로 각 기업은 기업마다의 특성에 알맞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제반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각자 특성에 맞는 법적 정보관리의 구체적 방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기술도입 계약취급 규정, 사내 영업비밀의 신고제 및 보상제, 영업비밀 관리규정 등의 기본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고, 정보관리 수단으로의 사원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 함으로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퇴직자의 경업제한 계약에 대해서는 경업의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

를 제한의 기간이나, 장소적 범위, 제한대상이 되는 직종의 범위, 대가의 유무 등에 대해서 채권자의 이익, 채무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이익(독점, 과점, 이에 따른 소비자의 이해 등) 등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인바 기업주와 종업원 상호간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맺는 말

최근 기술혁신의 현저한 진전, 경제사회의 정보화 등으로 인하여 그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산업기술이나 판매전략 등 사업활동에 유용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외국 제도와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등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 및 예방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하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영업비밀에 관한 기본적인 틀만을 정하고 그 운용은 기업에서 직접하게 되는 특수한 법이므로 앞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분 즉, 산업계, 노동계 할 것 없이 이법 운용에 실제로 직면한 모든

분야의 종사원이 모두 다함께 우선 비교적 익숙하지 못한 영업비밀의 법적개념을 보다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확실히 이해하여 입법취지에 벗어난 권리 주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어전략도 아울러 수집하여 임·직원에 대한 교육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기업은 기업특성에 맞는 법적 정보관리의 구체적 방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용계약 등에 관한 취업규칙, 기술도입취급규정, 사내 영업비밀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 운영, 기타 비밀분류 등의 기본방침등을 정한 영업비밀 관리규정 등을 만들어 운용해야 할 것이고 정보관리 수단으로서의 사원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은 사회질서(공서 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 함으로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점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내지 판례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부는 토론 학계, 법조계, 산업계의 협조가 크게 필요 할 것이다. <♣>

발간이내

英文 産業財産權 法令集

THE KOREAN INDUSTRIAL PROPERTY LAWS(영문 산업재산권 법령집) 發刊

본회는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대폭 개정된 산업재산권 4法の 영문 법령집을 다음과 같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자료는 관련업계의 산업재산권 분야 국제간 교류 및 특허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본회로 연락바랍니다.

— 다음 —

- 체제 : 4.6 배판
- 면수 : 174면
- 수록내용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 가격 : 5,000원

※연락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
Tel : 551-5571~2